[별표 2] <개정 2014.6.10>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5항관련)

표 시 장 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방향지시등 자동표시기	녹 색	–		–
비상경고신호등 자동표시기	–	–		–
안전띠자동표시기	적 색	안전띠착용, fasten Belts 또는 Fasten Seat be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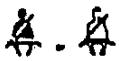	–
연료량자동표시기	–	연료 또는 Fu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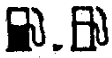	–
연료계	–			설치필요
오일압력자동표시기	–	오일 또는 oil		–
오일압력계	–			설치필요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	온도 또는 Temp		–
온도계	–			설치필요
충전자동표시기	–	전압, 전류, 충전, Volts, Amp 또는 Charge		–
전류계	–			설치필요
주행빔자동표시기	청색 또는 녹색	–		–
ABS고장자동표시기	황 색	자동제어 또는 A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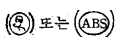	–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적색 또는 황색	제동, Brake		–
주차제동장치자동표시기	적색 또는 황색	주차, Parking		–
속도계	–	Km/h 또는 MPH	–	설치필요
자동변속기변속단수	–	제작자가 정함	–	설치필요
경제운전 표시장치	청색 또는 녹색	에코 또는 ECO	–	설치필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황색 또는 호박색	ESC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	황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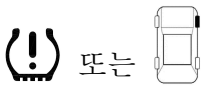 또는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	황색 또는 호박색	ESC OFF		-
수소누출감지 자동표시기	적색	수소누출, H_2 또는 H_2 Leak	-	설치필요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자동표시기	황색 또는 호박색	수소센서, H_2 또는 H_2 Sensor	-	설치필요

주 :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경우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 제작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4.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6. 공기식 주제동장치의 제동장치고장 자동표시기의 경우 "제동공기 또는 Brake Air" 식별단어 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색상은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경우, 식별부호의 자동차 외형은 실제 외형을 더 잘 표시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외형을 사용할 수 있다.

9. 하나의 표시장치로 2개 이상의 제동장치상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